

#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837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하남시는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하남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하남시의 예산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였고, 해당 건축물 6층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대주인 하남도시공사에 제공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9. 3. 27. 용지공급 협약 체결, 2022. 1. 26. 사용대차 계약 체결
- 이에, 오는 4월 개관 예정인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시설현황

- 명 칭 : 하남시종합복지타운 (2023. 11. 30. 준공)
  - 소재지 : 하남시 신장동 574번지
  - 시설규모 : 부지 5,421.9㎡, 연면적 9,263.33㎡ (지하1층 / 지상6층)
    - 가족어울림센터 : 7,003.51㎡ (지하1층/지상6층)
    - 보건회관 : 2,259.82㎡ (지하1층/지상4층)
- ※ 시설 세부 현황 : 붙임 참조

## 3.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감면대상
  - 시설규모 : 가족어울림센터 6층 (562.02㎡)
  - 주요시설 : 사무실, 시설관리실 등
- 사용기관 : 하남도시공사

####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상호 간의 용지공급 협약 및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였고,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에 해당 건축물 최상층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음
- 또한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하남도시공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발생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공간을 무상임대 하려는 것이므로, 하남시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5. 향후계획

- 2024. 1. ~ 2. :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
- 2024. 3. : 각 기관 및 보훈단체 입주
- 2024. 4. : 개관(예정)

#### 6.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시설 세부 현황 및 전경 1부  
3. 용지공급 협약서 1부(별첨)  
4. 사용대차 계약서 1부(별첨). 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 5. 생략

## 붙임 2

## 종합복지타운 세부 현황 및 전경

### ○ 종합복지타운 세부 현황

층별	가족어울림센터(지하1층/지상6층)		보훈회관 (지하1층/지상4층)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지상6	562.02	하남도시공사 사무실, 시설관리실 등	X	
지상5	549.32	프로그램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상4	548.56	가족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283.86	보훈단체사무실(3개 단체), 라운지, 탕비실
지상3	474.16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630.66	보훈단체사무실(3개 단체), 체력단련실, 회의실, 보훈휴게실, 라운지, 탕비실
지상2	927.66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프로그램실	182.99	보훈단체사무실(2개 단체), 라운지, 탕비실
지상1	575.28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년감도서관,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39.89	보훈홍보전시관, 보훈단체사무실(1개 단체)
공용	1,507.77	화장실, 지상주차장(64대) 등	922.42	화장실, 복도 등
지하1	1,858.74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37대) 등		
합계	<b>9,263.33</b>			

### ○ 전경사진

